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_	
람	



제 1366 호 2022. 10. 18.(화)

공 -
-----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1405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1406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10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1407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**19**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1408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41

	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
안	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내	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	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
		ı		ı	
호					
라					
1 8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- 1405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8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○ 행정기구의 명칭 체계를 간소화하고, 지역 현안과 국가시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실・국 및 담당관・과장의 명칭 변경(안 제2조)
  - 1) 실 · 국의 명칭을 국으로 통일
  - 2) 담당관·과장의 명칭을 과장으로 통일
- 나. 국의 명칭 변경
  - 1) 기획조정실 → 기획재정국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과의 명칭 변경
  - 1)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(안 제4조제1항)
    - 가) 기획예산담당관 → 기획예산과
    - 나) 미디어정보담당관 → 미디어정보과
    - 다) 경제일자리담당관 → 일자리경제과
    - 라) 회계담당관 → 회계과
    - 마) 징수담당관 → 세무1과
    - 바) 부과담당관 → 세무2과

- 2)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(안 제5조제1항)
  - 가) 주민소통과 → 주민자치과
- 3)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(안 제6조제1항)
  - 가) 복지지원과 → 복지정책과
  - 나) 환경미화과 → 자원순환과
- 3. **관계법령** :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라. 제 출 처
  - 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
  - 2)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  - 3) 전자우편(E-mail) : ginger@korea.kr

#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###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"(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"을 "(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 "을 "국장 및 과장"으로, "담당관·과장"을 "과장"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"(실·국의 설치)"를 "(국의 설치)"로 하고, 같은 조 중 "기획조정실" 을 "기획재정국"으로 한다.

- 제4조의 제목 "(기획조정실에 두는 과)"를 "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기획재정국 장"으로 한다.
  -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, 미디어정보과, 일자리경제과, 회계과, 세무1과, 세무2과를 둔다.

제5조의 제1항 중 "주민소통과"를 "주민자치과"로 한다.

제6조의 제1항 중 "복지지원과"를 "복지정책과"로, "환경미화과"를 "자원순환과" 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"담당관·과"를 각각 "과"로 한다.

②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"실·국장"을 "국장"으로 한다.

- ③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조제3항 중 "담당관·과"를 "과"로 한다.
- ④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조제2항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실·국장"을 "국장"으로 한다.
- 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별표2 부서란 중 "징수담당관"을 "세무2과"로 한다.
-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6조제5항제1호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7항 중 "기획예산담당관"을 "소관 부서장"으로 한다.
- ⑦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- 제3조제4항제1호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

7항중 "기획예산담당관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
8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항 중 "실·국·소·관장 또는 담당관·과장"을 "국·소·관장 또는 과장"으로 한다.

⑨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"실·국장"을 "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기획조정실 장"을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한다.

- ①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 중 "실·국장"을 "국장"으로 한다.
- ①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3호 중 "실·국장"을 "국장"으로 한다.

- ⑩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3조제3항제1호 중 "실·국장"을 "국장"으로 한다.
- ③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3호 중 "실·국장"을 "국장"으로 한다.

①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5호 중 "실·국장"을 "국장"으로 한다.

⑤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"실·국·소장"을 "국·소장"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실·국·소·관장, 담당관·과장"을 "국·소·관장, 과장"으로 한다.

(b)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한다.

(17)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실·국장"을 "국장"으로 한다.

(B)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한다.

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분임징수관 : 자원순환과장

3. 재무관 : 기획재정국장

4. 분임재무관 : 회계과장

②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 중 "실·국·소·관장 및 담당관·과장"을 "국·소·관장 및 과장"으로 한다.

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실·국, 담당관·과"를 "국, 과"로 한다.

②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"기획예산담당관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
#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### 혅 했 개 정 안 제2조(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) ① -제2조(실・국장 및 담당관・과장의 직급 등) ①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"구"라 한다)본청의 실·국장 및 ----- 국장 및 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·과장의 사무분장 ----- 과장 -----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.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3조(실·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 제3조(국의 설치) -----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• ----- 기획재정국--행정지원국 • 복지환경국 · 안전건설 국을 둔다. 제4조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 ① 기 제4조(기획조정실에 두는 과) ① 기 획조정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, 미 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, 미디어 디어정보담당관, 경제일자리담당 정보과, 일자리경제과, 회계과, 세 관, 회계담당관, 징수담당관, 부과 무1과, 세무2과를 둔다. 담당관을 둔다. ② 기획재정국장-----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-----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

공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 행	제5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
정지원국에는 총무과, <u>주민소통과</u> ,	<u>주민자치과</u> ,
문화체육과, 교육청소년과, 관광진	
흥과, 민원지적과를 둔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① 복	제6조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①
지환경국에는 <u>복지지원과</u> , 노인장	<u>복지정책과</u>
애인과, 가족정책과, 농수산과, 환	
경위생과, <u>환경미화과</u> 를 둔다.	<u>자원순환과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#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- 1406호

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합니다.

#### 2022년 10월 18일

### 1. 개정이유

○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,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 : 696명(증 3명) (안 제2조)
  - 1) 집행기관의 정원 : 681명(증 3명)
- 나. 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 (안 별표3)
  - 1) 6급 이하 : 650명(증 3명)

### 3. 관계법령

- 가.「지방자치법」제125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0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(별표)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라. 제 출 처
  - 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
  - 2)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  - 3) 전자우편(E-mail) : ginger@korea.kr

#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##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696명"을 "699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678 명"을 "681명"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## 정원관리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동
총계	<u>699</u>			-		
정무직계	1			-		
구청장	1	1	-	-	-	-
일 반 직 계	<u>697</u>			-		
3급	1	1	-	-	-	-
4급	5	4	-	1	-	-
5급	41	24	3	4	2	8
6급 이하 계	<u>650</u>			-		
별정직계	1			-		
6급 상당 이하 계	1			-		

### 신・구 조문(별표) 대비표

#### 혂 햀

제2조(정원의 총수) 울산광역시 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<u>696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699명</u>-----.

- 1. 집행기관의 정원 : 678명
- 2. (생 략)

#### 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총 계	<u>696</u>			-		
정무직 계	1			-		
구청장	1	1	_	-	-	-
일반직 계	<u>694</u>			-		
3급	1	1	-	-	-	-
4급	5	4	-	1	-	-
5급	41	24	3	4	2	8
6급이하 계	<u>647</u>			-		
별정직 계	1			-		
6급상당 이하 계	1			-		

## 개 정 안

- 1. ---- <u>681명</u>
- 2. (현행과 같음)

#### 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총 계	<u>699</u>			-		
정무직 계	1			-		
구청장	1	1	-	-	-	ı
일반직 계	<u>697</u>			-		
3급	1	1	-	-	-	-
4급	5	4	-	1	-	-
5급	41	24	3	4	2	8
6급이하 계	<u>650</u>			-		
별정직 계	1			-		
6급상당 이하 계	1			-		

### 관계법령

### □「지방자치법」
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  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  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  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- 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-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  - 2. 삭제
  -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 -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 -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-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- 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(일반직 3명 증원)

공

### 2. 비용추계 전제

- 인건비 산출 기준 : 2022년도 기준인건비 일반직 단가 적용
  - 75,656천원(일반직 기준 단가) × 3명 = 226,968천원
-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: 3% 증액 추산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	연도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구분		합계	(2023년)	(2024년)	(2025년)	(2026년)	(2027년)
세출	인건비	1,205,001	226,968	233,777	240,790	248,013	255,453
세골	소계(a)	1,205,001	226,968	233,777	240,790	248,013	255,453
വിറി	인건비	0	0	0	0	0	0
세입 	소계(b)	0	0	0	0	0	0
총비	용(a-b)	1,205,001	226,968	233,777	240,790	248,013	255,453

4. 부대의견 : 해당 없음

5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6. 작 성 자 :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우안녕(241-7102)

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

### 1. 재원조달계획

(단위 : 천원)

2022. 10. 18.(화요일)

구분	연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	계	1,205,001	226,968	233,777	240,790	248,013	255,453
구 비	일반회 계	1,205,001	226,968	233,777	240,790	248,013	255,453

2. 재원조달방안 : 연차별 구비 확보

3. 부대의견 : 해당 없음

4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5. 작 성 자 :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우안녕(241-7102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- 1407호

#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8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○ 행정기구의 명칭 체계를 간소화하고, 지역 현안과 국가시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구 개편 사항 반영
  - 1) 실·국 및 담당관·과의 명칭 변경 반영(안 제1조, 제2조, 제7조)
  - 가) 실・국 → 국, 담당관・과 → 과
  - 2) 국의 명칭 변경 반영(안 제3조)
    - 가) 기획조정실 → 기획재정국
  - 3) 과의 명칭 변경 반영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
    - 가) 기획예산담당관 → 기획예산과
    - 나) 미디어정보담당관 → 미디어정보과
    - 다) 경제일자리담당관 → 일자리경제과
    - 라) 회계담당관 → 회계과
    - 마) 징수담당관 → 세무1과

- 바) 부과담당관 → 세무2과
- 사) 주민소통과 → 주민자치과
- 아) 복지지원과 → 복지정책과
- 자) 환경미화과 → 자원순환과

### 나. 분장사무 조정(별표)

- 1)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(안 별표 1)
  - 가)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
  - 나) 세무부서 간 담당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사항 반영
  - 다) 신설사무 및 이관사무 등 변경사항 반영
    - 기획예산과 "청원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" 삭제
    - 총무과 공무직 관련 용어 수정사항 반영
      - "현업실무원 및 도로보수원" 삭제, 환경미화원 → 환경공무 직
    - 주민자치과 "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" 신설
    - 어촌체험마을,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, 산하해변 물놀이장 관련 사무의 담당부서 이관사항(관광진흥과 → 농수산과) 반영
    - 복지정책과 "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" 신설
    - 건설과 "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및 추진에 관한 사 항" 신설
    -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무의 담당부서 이관사항(교 통행정과 → 도시과) 반영
    - 건축주택과 "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" 신설

### 3. 관계법령

- 가.「지방자치법」제125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, 제14조 다. 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제2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라. 제 출 처
  - 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
  - 2)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  - 3) 전자우편(E-mail) : ginger@korea.kr

#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

###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"을 "국장, 과장"으로, "담당관·과장"을 "과장"으로 한다.

제2조 중 "담당관·과장은 소속실·국장"을 "과장은 소속 국장"으로 한다.

제2장 제1절의 제목 "기획조정실"을 "기획재정국"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"(기획조정실)"을 "(기획재정국)"으로, 같은 조 중 "실장"을 "국장"으로, "기획예산담당관·미디어정보담당관·경제일자리담당관·회계담당관·징수담당관·부과담당관"을 "기획예산과장·미디어정보과장·일자리경제과장·회계과장·세무1과장·세무2과장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주민소통과장"을 "주민자치과장"으로 한다.

제5조 중 "복지지원과장"을 "복지정책과장"으로, "환경미화과장"을 "자원순환과 장"으로 한다.

제7조 제목 "(담당관·과의 사무분장)"을 "(과의 사무분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담당관·과"를 "과"로 한다.

별표 1의 부서명란 중 "기획예산담당관"을 "기획예산과"로 하고, 기획예산과 분장사무란 중 제89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의 부서명란 중 "미디어정보담당관"을 "미디어정보과"로, "경제일자리담당관"을 "일자리경제과"로, "회계담당관"을 "회계과"로 하고, 징수담당관란과부과담당관란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별표 회계과란 다음에 세무1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세무1과

- 1. 지방세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2.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
- 3. 기부금품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지방세정 종합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
- 5. 지방세 통계연감 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
- 6.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- 7. 지방세의 징수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8. 세입의 환급 및 충당에 관한 사항
- 9.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
- 10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
- 11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
- 12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
- 13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
- 14.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15. 지방세 지출보고서 총괄에 관한 사항
- 16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
- 17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
- 18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
- 19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20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

- 21.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
- 22.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
- 23. 재산조회 및 시가표준액 회신에 관한 사항
- 24.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
- 25. 주택가격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- 26. 주택가격 조사·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
- 27.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세무1과란 다음에 세무2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세무2과

- 1.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
- 2.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
- 3. 지방세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
- 4. 공매. 교부청구. 징수촉탁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
- 5. 관허사업제한,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재제에 관한 사항
- 6.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
- 7.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
- 8. 지방세 체납액 중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
- 9.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
- 10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
- 11.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
- 12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
- 13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
- 14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
- 15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
- 16.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
- 17.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18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
- 19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
- 20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
- 21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22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
- 23.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
- 24.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
- 25. 세외수입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
- 26. 의존수입(교부금, 보조금, 전입금) 세입정리

2022. 10. 18.(화요일)

- 27.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
- 28. 지난연도 세외수입(일반회계)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- 29.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- 30.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총무과 분장사무란 중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4호 중 "환경 미화원"을 "환경공무직"으로 한다.

20. 공무직 채용 및 배치전환(청원경찰의 채용·현원관리 포함)에 관한 사항

별표 1 부서명란 중 "주민소통과"를 "주민자치과"로 하고, 주민자치과 분장사 무란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3. 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관광진흥과 분장사무란 중 제30호, 제31호, 제3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의 부서명란 중 "복지지원과"를 "복지정책과"로 하고, 복지정책과 분장 사무란에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7. 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농수산과 분장사무란에 제103호부터 제10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3. 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104.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
- 105.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부서명란 중 "환경미화과"를 "자원순환과"로 하고, 같은 별표의 건설

2022. 10. 18.(화요일)

과 분장사무란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4.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도시과 분장사무란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0.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교통행정과 분장사무란 중 제32호를 삭제하고, 같은 별표 건축주택과 분장사무란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4.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"회계담당관"을 "회계과장"으로, "담당관·과장"을 "과장"으로, "담당관·과"를 "과"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호나목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회계담당관"을 "회계과장"으로 한다.

②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"기획예산담당관, 주민소통과, 회계담당관, 총무과, 안전총괄과, 미디어정보담당관, 징수담당관, 부과담당관"를 "기획예산과, 주민자치

과, 회계과, 총무과, 안전총괄과, 미디어정보과, 세무1과, 세무2과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복지지원과"를 "복지정책과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환경미화과, 경제일자리담당관"을 "자원순환과, 일자리경제과"로 한다.

③ 울산광역시 북구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"담당관·과장"을 "과장"으로 한다.

④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한다.

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담당관·과장"을 "과장"으로 한다.

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별지 제1호서식 (7-2) 중 "부과담당관"을 각각 "세무1과"로 한다.

⑦ 울산광역시 북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담당관·과장"을 "과장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, 제6조제2항, 제7조제3항, 제4항 및 제5항,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"기획예산담당관"을 각각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기획예산담당관"을 "기획예산과"로 한다.

⑧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"담당관·과장"을 "과장"으로 한다.

⑨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및 제12호와 제4조제2항 중 "담당관·과장"을 "과장"으로 한다. ①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,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"실·국장"을 각각 "국장"으로 한다.

제13조 중 "담당관·과"를 "부서"로 한다.

# 신・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울산광역시	제1조(목적)
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제2조	
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의	
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의 직급,	<u>국장, 과장</u>
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	
장의 직급과 <u>담당관·과장</u> 의 사무	<u>과장</u>
분장 등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	
구 설치 조례」시행에 필요한 사	
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직무) <u>담당관・과장은 소속</u>	제2조(직무) <u>과장은 소속 국장을</u> -
<u>실·국장을</u> 보좌하고, 소속직원을	
지휘·감독한다.	
제1절 <u>기획조정실</u>	제1절 <u>기획재정국</u>
제3조( <u>기획조정실</u> ) <u>실장</u> 은 지방서기	제3조( <u>기획재정국</u> ) <u>국장</u>
관으로 보하고, <u>기획예산담당관·</u>	<u>기획예산과장</u>
미디어정보담당관・경제일자리담	·미디어정보과장·일자리경제과
<u>당관·회계담당관·징수담당관·</u>	<u>장·회계과장·세무1과장·세무2</u>
<u>부과담당관</u> 은 지방행정사무관으	과장
로 보한다.	
제4조(행정지원국) 국장은 지방서기	제4조(행정지원국)
관으로 보하고, 총무과장· <u>주민소</u>	<u>주민자</u>
<u>통과장</u> ·문화체육과장·교육청소년	<u> 치과장</u>
과장·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	
무관으로, 민원지적과장은 지방시	
설사무관으로 보한다.	,
제5조(복지환경국) 국장은 지방서	제5조(복지환경국)

현 행	개 정 안
기관으로 보하고, <u>복지지원과장</u> 은	복지정책과장
지방행정사무관으로, 노인장애인	
과장・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	
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,	
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	
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	
무관으로, <u>환경미화과장</u> 은 지방행	<u>자원순환과장</u>
정사무관으로, 농수산과장은 지방	
농업사무관·지방해양수산사무관	
으로 보한다.	
제7조( <u>담당관·과의 사무분장</u> ) 구	제7조( <u>과의 사무분장)</u>
본청에 두는 <u>담당관·과</u> 의 사무분	<u>_</u>
장은 별표1과 같다.	

## 신 · 구 별표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 1]		[별표 1]	
<u>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</u> (제7조 관련)		<u>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(</u> 제7조 관련)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기획예산담당관	1. ~ 88. (생 략)	기획예산과	1. ~ 88. (현행과 같음)
	89. 청원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90. ~ 99. (생 략)		90. ~ 99. (현행과 같음)
미디어정보담당관	1. ~ 34. (생 략)	미디어정보과	1. ~ 34. (현행과 같음)
경제일자리담당관	1. ~ 72. (생 략)	<u>일</u> 자리경제과	1. ~ 72. (현행과 같음)
회계담당관	1. ~ 30. (생 략)	<u>회계과</u>	1. ~ 30. (현행과 같음)
<u>징수담당관</u>	1. 지방세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	<삭 제>	_<삭 제>
	2.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_		_<삭 제>
	3. 기부금품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4.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_		_<삭 제>
	5. 지방세 통계연감 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6.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7. 지방세의 징수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8. 세입의 환급 및 충당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9.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
공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10. 의존수입(교부금, 보조금, 전입금) 세입정리		_<삭 제>
	11.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12.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		_<삭 제>
	13. 지방세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14. 공매, 교부청구, 징수촉탁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15. 관허사업제한,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재제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16.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17.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_		_<삭 제>
	18. 지방세 체납액 중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9.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0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21.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22.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23. 세외수입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_		<삭 제>
	24.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25.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26.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7.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
	현 행		개 정 안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<u>부과담당관</u>	1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3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4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5.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_		<삭 제>
	6.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7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_		<삭 제>
	8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9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0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11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12.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		< <u>삭 제&gt;</u>
	13.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4. 재산조회 및 시가표준액 회신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5.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6. 주택가격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7. 주택가격 조사·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		<삭 제>
<u>&lt;신 설&gt;</u>	<u>&lt; 신 설&gt;</u>	세무1과	1. 지방세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	현 행		개 정 안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 신 설>		2.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3. 기부금품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4. 지방세정 종합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5. 지방세 통계연감 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6.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7. 지방세의 징수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8. 세입의 환급 및 충당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9.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10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11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12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13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14.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15. 지방세 지출보고서 총괄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16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
	<u>&lt; 신 설&gt;</u>		17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18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19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	<u>현</u> 행		개 정 안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 신 설>		20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21.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22.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23. 재산조회 및 시가표준액 회신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24.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25. 주택가격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26. 주택가격 조사·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27.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
<u>&lt;신 설&gt;</u>	< 신 설>	세무2과	1.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2.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
	<u>&lt; 신 설&gt;</u>		3. 지방세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4. 공매, 교부청구, 징수촉탁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5. 관허사업제한,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재제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6.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7.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8. 지방세 체납액 중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9.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10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

	현 행		개 정 안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 신 설>		11.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12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13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14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15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16.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17.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18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
	< 신 설>		19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20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21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22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23.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24.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25. 세외수입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26. 의존수입(교부금, 보조금, 전입금) 세입정리
	< 신 설>		27.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28. 지난연도 세외수입(일반회계)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
2022. 10. 18.(화요일)

보

공

	현 행		개 정 안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 신 설>		29.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	< 신 설>		30.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총무과	1. ~ 19. (생 략)	총무과	1. ~ 19. (현행과 같음)
	20. <u>공무직 채용(현업실무원 및 도로보수원의 배치전환,</u> 청원경찰의 채용·현원관리)에 관한 사항		20. <u>공무직 채용 및 배치전환(청원경찰의 채용·현원관리</u> 포함)에 관한 사항
	21. ~ 33. (생 략)		21. ~ 33. (생 략)
	34.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사항( <u>환경미화원</u> 제외)		34.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사항( <u>환경공무직</u> 제외)
	35. ~ 40. (생 략)		35. ~ 40. (생 략)
<u>주민소통과</u>	1. ~ 42. (생 략)	<u>주민자치과</u>	1. ~ 42. (현행과 같음)
	<u>&lt; 신 설&gt;</u>		43. 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관광진흥과	1 ~ 29. (생 략)	관광진흥과	1 ~ 29. (현행과 같음)
	30. 어촌관광개발,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		<u>&lt;</u> 식 제>
	31.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		_<삭 제>
	32. ~ 34. (생 략)		32. ~ 34. (현행과 같음)
	35. 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36. ~ 44. (생 략)		36. ~ 44. (현행과 같음)
<u>복지지원과</u>	1 ~ 66. (생 략)	<u>복지정책과</u>	1 ~ 66. (현행과 같음)
	<u>&lt; 신 설&gt;</u>		67. 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
농수산과	1. ~ 102. (생 략)	농수산과	1. ~ 102. (현행과 같음)

공

	현 행		개 정 안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 신 설>		103. 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104.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
	<u>&lt; 신 설&gt;</u>		105.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
환경미화과	1. ~ 31. (생 략)	<u> 자원순환과</u>	1. ~ 31. (현행과 같음)
건설과	1. ~ 53. (생 략)	건설과	1. ~ 53. (현행과 같음)
	< 신 설>		54.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및 추진에 관한 사항
도시과	1. ~ 39. (생 략)	도시과	1. ~ 39. (현행과 같음)
	< 신 설>		40.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
교통행정과	1. ~ 31. (생 략)	교통행정과	1 ~ 31. (현행과 같음)
	32.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33. (생 략)		33. (현행과 같음)
건축주택과	1. ~ 53. (생 략)	건축주택과	1. ~ 53. (현행과 같음)
	< 신 설>		54.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### 관계법령

#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보

공
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#### 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 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시·군·구의 실장·국장·담당관·과장 등의 직급기준)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장·국장·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은 별표 3과 같다.
- □ 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- 제2조(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 ①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"구"라한다)본청의 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·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 -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, 사업소의 장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급,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- 1408호

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합니다.

#### 2022년 10월 18일

#### 1. 개정이유

○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,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: 증3명(696명 → 699명)

나. 기관별 정원 조정

1) 직속기관 : 증3명(49명 → 52명)

다. 직급·직렬별 정원 조정

1) 6급 : 증5명

○ 본청 : 증2명(행정 감1, 행정·녹지 증1, 행정·시설 증1, 시

설 증1)

○ 의회사무과 : 증1명(속기 증1)

○ 사업소 : 증1명(행정·사서 증1)

○ 동 : 증1명(행정 증1)

3) 7급 : 증1명

○ 본청 : 증2명(행정 증3, 행정·녹지 감1, 행정·환경 감1, 행정·

시설 감2, 사회복지 증1, 공업·환경 증1, 녹지 증1)

○ 의회사무과 : 감1명(속기 감1)

○ 직속기관 : 증1명(수의·약무·간호 감1, 보건·의료기술·간호 증2)

○ 동 : 감1명(행정 감1)

4) 8급 : 증3명

○ 본청 : 증1명(행정 감1, 행정·시설 감2, 행정·운전 증1, 사회

복지 감1, 녹지 증1, 녹지·시설 증1, 보건 증1, 시설

증1)

○ 직속기관 : 증3명(간호 증2, 운전 증1)

○ 사업소 : 감1명(행정·사서 감1)

5) 9급 : 감6명

○ 본청 : 감5명(행정 감1, 공업·환경 감1, 녹지 감1, 녹지·시설

감1, 보건 감1)

○ 직속기관 : 감1명(운전 감1)

#### 3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0조

나.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제4조 및 제5조

#### 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(별표)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라. 제 출 처

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

2)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3) 전자우편(E-mail) : ginger@korea.kr

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

##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·직렬별 정원표(제2조 관련)
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
		합계	<u>699</u>	472	18	<u>52</u>	36	121(4)
합	계	정무직	1	1				
		일반직	<u>697</u>	470	18	<u>52</u>	36	121(4)
		별정직	1	1				
정무	구직	구 청 장	1	1				
		계	<u>697</u>	470	18	<u>52</u>	36	121(4)
	3급	소계	1	1				
		부이사관	1	1				
일	4급	소계	5	4		1		
		서기관	3	3				
		기술서기관	2	1		1		
	5급	소계	41	24	3	4	2	8
반		행정	26	15	3		2	6
		행정/사회복지	3	2				1
		행정/농업/ 해양수산/시설	1					1
		행정/녹지	1	1				
직		행정/보건/ 간호/의료기술	2			2		
		행정/보건/환경	1	1				
		행정/시설	1	1				
		의무	2			2		
		시설	3	3				
		농업/해양수산	1	1				
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일	6급	소계	149	108	<u>6</u>	11	7	<u>17</u>
		행정	64	<u>48</u>	5	1	1	9
반		행정/세무	6	6				
		행정/사회복지	11	3				8
직		행정/사서	<u>4</u>				4	
		행정/농업/해양수산	1	1				
		행정/녹지/시설	1	1				
		행정/녹지	<u>3</u>	<u>3</u>				
		행정/의료기술/간호	1			1		
		행정/환경	2	2				
		행정/시설	<u>7</u>	7				
		행정/공업	4	2			2	
		세무	3	3				
		전산	1	1				
		사회복지	3	3				
		<u>속기</u>	1		1			
		공업	1	1				
		농업	2	2				
		녹지	1	1				
		약무/간호	1			1		
		해양수산	1	1				
		보건	2	2				
		보건진료	1			1		
		공업/환경	1	1				
		시설	<u>16</u>	<u>16</u>				
		방송통신	2	2				
		운전	2	2				
		보건/의료기술/간호	7			7		
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일	7급	소계	<u>218</u>	<u>162</u>	4	<u>16</u>	10	<u>26</u>
		행정	<u>92</u>	<u>68</u>	4	1	4	<u>15</u>
반		행정/세무	2	2				
		행정/사회복지	8	5				3
직		행정/사서	3				3	
		행정/농업	1					1
		행정/시설	<u>5</u>	<u>5</u>				
		행정/학예연구	1	1				
		세무	8	8				
		전산	2	2				
		사회복지	<u>15</u>	<u>8</u>				7
		사서	3				3	
		공업	4	4				
		공업/환경	<u>2</u>	2				
		농업	3	3				
		농업/수의/해양수산	1	1				
		녹지	<u>5</u>	<u>5</u>				
		수의	1	1				
		해양수산	1	1				
		시설/해양수산	1	1				
		보건	5	4		1		
		보건/약무	1			1		
		보건/간호	1			1		
		보건/의료기술/간호	<u>4</u>			<u>4</u>		
		의료기술	2			2		
		간호	5			5		
		보건진료	1			1		
		환경	3	3				
		시설	28	28				
		시설/방재안전	1	1				
		방송통신	4	4				
		운전	3	3				
		전기운영	1	1				
		농림운영	1	1				
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일	8급	소계	<u>210</u>	<u>125</u>	3	<u>19</u>	<u>11</u>	52
		행정	<u>72</u>	<u>40</u>	2			30
반		행정/세무	2	2				
		행정/전산	1	1				
직		행정/사회복지	11	9				2
		행정/사서	<u>2</u>				<u>2</u>	
		행정/공업	1	1				
		행정/농업	2	1				1
		행정/보건	1	1				
		행정/환경	2	2				
		행정/환경/공업	1	1				
		행정/시설	<u>6</u>	<u>6</u>				
		행정/방송통신	1		1			
		행정/운전	<u>2</u>	<u>2</u>				
		세무	7	7				
		전산	3	2			1	
		사회복지	<u>16</u>	<u>5</u>				11
		사서	3				3	
		사서/공업	1				1	
		공업	5	1		1	3	
		공업/환경	2	2				
		농업/해양수산	1	1				
		녹지	<u>3</u>	<u>3</u>				
		녹지/시설	<u>2</u>	<u>2</u>				
		해양수산	2	2				
		농업	1	1				
		보건	<u>7</u>	<u>3</u>		4		
		보건/의료기술/간호	1			1		
		의료기술	4			4		
		간호	<u>15</u>			<u>7</u>		8
		시설	<u>21</u>	<u>21</u>				
		시설/전산	1	1				
		시설/해양수산	1	1				
		방송통신	2	1			1	
		운전	<u>7</u>	5		<u>2</u>		
		방재안전	1	1				
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ド
일	9급	소계	<u>73</u>	46	2	1	6	18(4)
		행정	<u>32</u>	<u>19</u>			1	12(4)
반		행정/세무	2	2				
		행정/사회복지	4					4
직		행정/사서	1				1	
		행정/녹지	1	1				
		행정/농업	1	1				
		세무	2	2				
		사회복지	9	7				2
		사서	4				4	
		속기	1		1			
		장면	3	3				
		공업/환경	<u>1</u>	1				
		녹지	<u>1</u>	1				
		보건	<u>2</u>	2				
		보건/의료기술	1			1		
		시설	6	6				
		방송통신	1	1				
		운전	<u>1</u>		1			
별		계	1	1				
정	6급	소계	1	1				
직	상당	비서	1	1				_

※ 괄호( )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.

# 신 • 구 별표 대비표

	현		행								개	정	안				
별표] 울산광'	역시 북구 지방공무원	직급·	직렬	道 정·	원표(>	제2조	관련)	[	울·		부시 <del>북구</del> 지방공무원	직급 ·	직렬 <sup>1</sup>	별 정·	원표(>	제2조	관련)
직 직 종 급 별 별	직렬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 속 기 관	사 업 소	ीत		직 종 별	급	직렬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 속 기 관	사 업 소	동
	합계	<u>696</u>	472	18	<u>49</u>	36	121(4)				합계	<u>699</u>	472	18	<u>52</u>	36	121(
합계	정무직	1	1						합	계	정무직	1	1				
	일반직	<u>694</u>	470	18	<u>49</u>	36	121(4)				일반직	<u>697</u>	470	18	<u>52</u>	36	121(
	별정직	1	1								별정직	1	1				
정무직	구 청 장	1	1						정무	구직	구 청 장	1	1				
	계	<u>694</u>	470	18	<u>49</u>	36	121(4)				계	<u>697</u>	470	18	<u>52</u>	36	121(
3급	소계	1	1							3급	소계	1	1				
	부이사관	1	1								부이사관	1	1				
일 4급	소계	5	4		1				일	4급	소계	5	4		1		
	서기관	3	3								서기관	3	3				
	기술서기관	2	1		1						기술서기관	2	1		1		
5급	소계	41	24	3	4	2	8			5급	소계	41	24	3	4	2	8
반	행정	26	15	3		2	6		반		행정	26	15	3		2	6
	행정/사회복지	3	2				1				행정/사회복지	3	2				1
	행정/농업/ 해양수산/시설	1					1				행정/농업/ 해양수산/시설	1					1
	행정/녹지	1	1								행정/녹지	1	1				
직	행정/보건/ 간호/의료기술	2			2				직		행정/보건/ 간호/의료기술	2			2		
	행정/보건/환경	1	1								행정/보건/환경	1	1				
	행정/시설	1	1								행정/시설	1	1				
	의무	2			2						의무	2			2		
	시설	3	3								시설	3	3				
	농업/해양수산	1	1								농업/해양수산	1	1				

	진급별										개 7	0	갵				
일		직렬별	총 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 속 기 관	사 업 소	동	지종별	지그ㅂ별	직렬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 속 기 관	사 업 소	동
	6급	소계	<u>144</u>	<u>106</u>	<u>5</u>	11	<u>6</u>	<u>16</u>	일	6급	소계	<u>149</u>	<u>108</u>	<u>6</u>	11	7	<u>17</u>
		행정	64	<u>49</u>	5	1	1	<u>8</u>			행정	64	<u>48</u>	5	1	1	9
반		행정/세무	6	6					반		행정/세무	6	6				
		행정/사회복지	11	3				8			행정/사회복지	11	3				8
직		행정/사서	<u>3</u>	<u>0</u>			<u>3</u>		직		행정/사서	4	_			4	
		행정/농업/해양수산	1	1							행정/농업/해양수산	1	1				
		행정/녹지/시설	1	1							행정/녹지/시설	1	1				
		행정/녹지	2	2							행정/녹지	<u>3</u>	<u>3</u>				
		행정/의료기술/간호	1			1					행정/의료기술/간호	1			1		
		행정/환경	2	2							행정/환경	2	2				
		행정/시설	<u>6</u>	<u>6</u>							행정/시설	7	7				
		행정/공업	4	2			2				행정/공업	4	2			2	
		세무	3	3							세무	3	3				
		전산	1	1							전산	1	1				
		사회복지	3	3							사회복지	3	3				
			<신	설>							<u>속기</u>	1		1			
		공업	1	1							공업	1	1				
		농업	2	2							농업	2	2				
		녹지	1	1							녹지	1	1				
		수의/의무/약무/간호	1			1					약무/간호	1			1		
		해양수산	1	1							해양수산	1	1				
		보건	2	2							보건	2	2				
		보건진료	1			1					보건진료	1			1		
		공업/환경	1	1							공업/환경	1	1				
		시설	<u>15</u>	<u>15</u>							시설	<u>16</u>	<u>16</u>				
		방송통신	2	2							방송통신	2	2				
		운전	2	2							운전	2	2				
		보건/의료기술/간호	7			7					보건/의료기술/간호	7			7		

공

		현		행								개 ?	정	안				
직 종 별	직 급 별	직렬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 속 기 관	사 업 소	동		직 종 별	직 급 별	직렬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 속 기 관	사 업 소	뇽
일	7급	소계	<u>217</u>	<u>160</u>	<u>5</u>	<u>15</u>	10	<u>27</u>		일	7급	소계	<u>218</u>	<u>162</u>	<u>4</u>	<u>16</u>	10	<u>26</u>
		행정	<u>90</u>	<u>65</u>	4	1	4	<u>16</u>				행정	<u>92</u>	<u>68</u>	4	1	4	<u>15</u>
반		행정/세무	2	2						반		행정/세무	2	2				
		행정/사회복지	8	5				3				행정/사회복지	8	5				3
직		행정/사서	3	0			3			직		행정/사서	3	_			3	
		행정/농업	1					1				행정/농업	1					1
		행정/녹지	1	1									<삭	제>				
		행정/환경	1	1									<삭	제>				
		행정/시설	7	7								행정/시설	<u>5</u>	<u>5</u>				
		행정/학예연구	1	1								행정/학예연구	1	1				
		세무	8	8								세무	8	8				
		전산	2	2								전산	2	2				
		사회복지	<u>14</u>	7				7				사회복지	<u>15</u>	<u>8</u>				7
		사서	3	<u>0</u>			3					사서	3	_			3	
		<u>속기</u>	1		1								<삭	제>				
		공업	4	4								공업	4	4				
		공업/환경	1	1								공업/환경	2	2				
		농업	3	3								농업	3	3				
		농업/수의/해양수산	1	1								농업/수의/해양수산	1	1				
		녹지	4	4								녹지	<u>5</u>	<u>5</u>				
		수의	1	1								수의	1	1				
		<u>수의/약무/간호</u>	1			1							<삭	제>				
		해양수산	1	1								해양수산	1	1				
		시설/해양수산	1	1								시설/해양수산	1	1				
		보건	5	4		1						보건	5	4		1		
		보건/약무	1			1						보건/약무	1			1		
		보건/간호	1			1						보건/간호	1			1		
		보건/의료기술/간호	2			2						보건/의료기술/간호	4			<u>4</u>		
		의료기술	2			2						의료기술	2			2		
		간호	5			5						간호	5			5		
		보건진료	1			1						보건진료	1			1		
		환경	3	3								환경	3	3				
		시설	28	28								시설	28	28				
		시설/방재안전	1	1								시설/방재안전	1	1				
		방송통신	4	4					1			방송통신	4	4				
		운전	3	3								운전	3	3				
		전기운영	1	1								전기운영	1	1				
		농림운영	1	1					1			농림운영	1	1				

		현		행							개기	정	안				
직 종 별	직 급 별	직렬별	총 계	본 청	의 회 사 무 과	직 속 기 관	사 업 소	동	직 종 별	직 급 별	직렬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 속 기 관	사 업 소	동
일	8급	소계	207	124	3	<u>16</u>	<u>12</u>	52	일	8급	소계	<u>210</u>	125	3	<u>19</u>	<u>11</u>	52
		행정	<u>73</u>	<u>41</u>	2			30			행정	<u>72</u>	<u>40</u>	2			30
반		행정/세무	2	2					반		행정/세무	2	2				
		행정/전산	1	1							행정/전산	1	1				
직		행정/사회복지	11	9				2	직		행정/사회복지	11	9				2
		행정/사서	<u>3</u>				3				행정/사서	<u>2</u>				<u>2</u>	
		행정/공업	1	1							행정/공업	1	1				
		행정/농업	2	1				1			행정/농업	2	1				1
		행정/보건	1	1							행정/보건	1	1				
		행정/환경	2	2							행정/환경	2	2				
		행정/환경/공업	1	1							행정/환경/공업	1	1				
		행정/시설	<u>8</u>	8							행정/시설	<u>6</u>	<u>6</u>				
		행정/방송통신	1		1						행정/방송통신	1		1			
		행정/운전	1	1							행정/운전	2	2				
		세무	7	7							세무	7	7				
		전산	3	2			1				전산	3	2			1	
		사회복지	<u>17</u>	<u>6</u>				11			사회복지	<u>16</u>	<u>5</u>				11
		사서	3	<u>0</u>			3				사서	3	_			3	
		사서/공업	1				1				사서/공업	1				1	
		공업	5	1		1	3				공업	5	1		1	3	
		공업/환경	2	2							공업/환경	2	2				
		농업/해양수산	1	1							농업/해양수산	1	1				
		녹지	2	2							녹지	<u>3</u>	<u>3</u>				
		녹지/시설	1	1							녹지/시설	2	2				
		해양수산	2	2							해양수산	2	2				
		농업	1	1							농업	1	1				
		보건	<u>6</u>	2		4					보건	<u>7</u>	<u>3</u>		4		
		보건/의료기술	0			0						<삭	제>				
		보건/의료기술/간호	1			1					보건/의료기술/간호	1			1		
		의료기술	4			4					의료기술	4			4		
		간호	<u>13</u>			<u>5</u>		8			간호	<u>15</u>			7		8
		시설	<u>20</u>	<u>20</u>							시설	<u>21</u>	<u>21</u>				
		시설/전산	1	1							시설/전산	1	1				
		시설/해양수산	1	1							시설/해양수산	1	1				
		방송통신	2	1			1				방송통신	2	1			1	
		운전	<u>6</u>	5		1					운전	Z	5		2		
		방재안전	1	1					L		방재안전	1	1				

현 행										개 정 안									
직 종 별	직 급 별	직렬별	총 계	본 청	의 회 사 무 과	직 속 기 관	사 업 소	동		직 종 별	직 급 별	직렬별	총 계	본 청	의 회 사 무 과	직 속 기 관	사 업 소	동	
일	9급	소계	<u>79</u>	<u>51</u>	2	2	6	18(4)		일	9급	소계	<u>73</u>	<u>46</u>	2	1	6	18(4)	
		행정	<u>33</u>	<u>20</u>			1	12(4)		반		행정	<u>32</u>	<u>19</u>			1	12(4)	
반		행정/세무	2	2								행정/세무	2	2					
		행정/사회복지	4					4				행정/사회복지	4					4	
직		행정/사서	1	0			1			직		행정/사서	1	_			1		
	-	행정/녹지	1	1								행정/녹지	1	1					
		행정/농업	1	1								행정/농업	1	1					
		세무	2	2								세무	2	2					
		사회복지	9	7				2				사회복지	9	7				2	
		사서	4	0			4					사서	4	_			4		
		속기	1		1							속기	1		1				
		공업	3	3								공업	3	3					
		공업/환경	2	2								공업/환경	1	1					
		녹지	2	2								녹지	1	1					
		<u>녹지/시설</u>	1	1									<삭 제>						
		보건	3	<u>3</u>								보건	2	<u>2</u>					
		보건/의료기술	1			1						보건/의료기술	1			1			
		시설	6	6								시설	6	6					
		방송통신	1	1								방송통신	1	1					
		운전	2		1	1						운전	1		1	<삭제.			
별		계	1	1						별		계	1	1					
정	6급	소계	1	1						정	6급	소계	1	1					
직	상당	비서	1	1						직	상당	비서	1	1					

# 관계법령

#### 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공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보

-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- 2. 삭제
-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-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-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-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 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-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- 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## □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,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 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,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